

전자상거래법 소고

-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미국 통일전자거래법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을 중심으로 -

김은영
한라대학교 경상학부 조교수
E-mail: uykim@hit.halla.ac.kr

.....

신기술에 의한 체제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1999년 채택된 미국 통일전자거래법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통일전자거래법은 개인간의 거래에서의 지침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통일전자거래법에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여기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어음은 법제정이 있기도 전에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는 개념으로 금융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보호지침을 도입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는 각종 분쟁의 경우 법원의 해석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사법부우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예상되는 각종 분쟁에 대한 미국의 판례연구는 한국에서도 신속하게 연구되어 적용되어야 할 분야라 하겠다.

.....

I. 서론

인터넷을 통한 거래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해져 세계의 21세기 신경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고 있다. 신기술은 거래방식을 바꿀 뿐 아니라 체제를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체계는 국내와 국외의 법제간 차이를 좁히고 국내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모델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종용하고 있다.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모델법이 1996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는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제정했

다. 제정된 이후 동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법적인 논의가 활발한 토론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1999년) 미국 통일주법전국대의원회의(NCCUSL;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에서 통과되어 2000년 이후 각주에서 속속들이 채택하고 있는 통일전자거래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 대해 상호비교해 보고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II. 우리나라 전자상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의 내용

우선 우리나라에는 전자상거래 관련법으로 전자거래기본법외에 전자서명법, 정보화촉진기본법, 그밖의 특허법,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화물유통촉진법, 상법, 조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등이 있는데 이중에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이 가장최근에 입안된 전자상거래법이라 할 수 있다.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된 전자거래기본법은 제정취지와 전자문서의 정의,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 부여를 명시해 놓았다. 제1조에서는 법률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공정성을 기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면은 UNCITRAL 모델법보다 포괄적이며 아무런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통일전자거래법과 대조된다. 제5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제7조에서는 재판절차에서는 전자문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한다. 제8조에서 제12조에서는 거래의 성립주의에 있어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도달주의를 채택했다. 즉, 작성자 이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에 전자문서가 입력된 때가 송신시기이며 지정한 컴퓨터 등이 아닌 컴퓨터 등에 입력된 경우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거래의 성립시기로 지정한 것이다. 거래의 성립장소는 작성자

와 수신자의 영업장소재지를 주된 송수신지로 본다. 전자문서의 귀속문제는 작성자의 대리인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의해 송신된 전자문서를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고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송신되었을 경우 작성자가 송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신한 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본다. 수신확인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수신사실을 작성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수신확인 통지가 작성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수신확인이 효력발생조건은 아니며 다만 수신확인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 작성자가 그 전자문서의 송신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전자거래의 안전에 대해서는 사생활의 보호와 컴퓨터의 안정성을 명시해 놓았다. 제15조에서는 사이버몰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익명성을 완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다. 사이버몰의 규정은 통일전자거래법이나 원래의 모델법에서도 채택하지 않은 진일보적인 조항이다. 그러나 처벌규정을 두지 않아 소비자보호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밖에도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전자문서의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일정요건을 갖춘 법인을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에서 제28조까지는 전자거래 촉진정책의 수립 및 추진, 기반조

성을 위해 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업의 전자거래 기술을 지원하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도록 하며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과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와 공정한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비자보호이다. 제29조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소비자보호의무, 제30조는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제30조는 소비자피해의 구제, 제30조에 피해보상기구의 설치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명확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전자서명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1999년 2월에 공포된 법이다. 주요내용은 전자서명의 개념을 정의하고 유의할 점은 제2조 2호에서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서명 생성기로 생성한 정보에 의한 디지털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인정한 점이다. 제3조에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제4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다. 제6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제15조에서 제18조에서는 인증서의 내용과 인증서의 효력에 관해 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 22조까지는 인증관리체제의 운영을 안전하

게 할 것을 명시하고 전자서명에 의한 거래당사자의 분쟁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관련 기록을 10년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24조에서는 공인인증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입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였다. 제26조에 의하면 공인인증기관인 인증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으며 손해가 불가항력이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된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배상책임은 당초의 모델법이나 통일전자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의 경우는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상황이라 이에 따라 기존 채권법상의 채무불이행 책임, 불법행위 책임, 입증책임소재, 과실 혹은 무과실 책임규정등의 적용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달라질 수 있고 논란의 소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동 법의 특징은 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비대칭 암호화 공개키 방식에 의한 디지털서명만을 전자서명으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의 기술발전에 의한 여타 방법의 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UNCITRAL에서의 전자서명 통일규칙 및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과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전자서명의 활용에 정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에 의한 인증서를 요건으로 한 것은 정부기관의 사이버거래에 대한 또다른 간섭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특정 기술에 의한 전자서명만을 인정하도록 한

것은 외국과의 거래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법의 문제점이다. 향후의 개정이나 보완을 통해 바람직한 법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이다.

III. 미국의 동향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는 나라이다.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은 1997년 7월 1일 발표된 미국의 전자상거래 국제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첫 작업이다. 이 보고서는 민간주도, 정부규제방지, 최소한의 정부 개입, 분권적이고 합의상달식의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관된 원칙 제정 등 5가지 원칙과 9가지 권고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① 무관세화 및 새로운 과세금지 ② 전자지불제도의 채택 ③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국제통일 규범마련 ④ 지적재산권 보호 ⑤ 개인사생활 보호 ⑥ 보안 보장 ⑦ 통신인프라와 정보기술에 대한 자유시장 접근 ⑧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 폐지 ⑨ 업계에 의한 자발적 기술표준 개발등이다. 미국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무관세 협정과 내국세부과금지 협정을 맺고 미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통신인프라와 정보기술, 각종 관련산업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분야의 교역을 재화의 교류로 할 것

인가 서비스로 할 것인가에 따른 논란이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기구상의 관세규정이 서비스와 재화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내에서는 재무성, 국세청, 보건후생성등지에서 전자거래에 관련한 보안이나 전자서명 승인문제, 전자거래에서의 계약책임등을 규정한 규칙들을 제정했으며 인터넷과세자유법, 디지털저작권법, 어린이사생활보호법, 정부문서감축법, 차세대인터넷연구법등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IV. 통일전자거래법(UETA)

공식적으로는 1997년 4월에 초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시의 법은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 Act로 되어 있고 초안 작성을 위해서 Drafting Committee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Contractual Transactions¹⁾가 위촉되어 있었다. 당시는 유엔 UNCITRAL의 모델법, 일리노이주 전자상거래법, 오클라호마 은행가협회의 디지털 서명법, 통일상법전(UCC; Uniform Commercial Code) 2B편 라이선스법(초안)등을 참고로 작성했다고 한다. 1997년 10월에 이르러 통일전자거래법(UE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으로 바꾸고 통일주법전국대의원회의(NCCUSL;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1) 리포터 Benjamin Beard의 메모내용이다.
<http://www.law.upenn.edu/bll/ulc/uecicta/ecomemo.htm>

전자상거래법 소고

UETA를 적용중인 주의 현황(2000년 10월 16일 현재)

State	Bill Number	현 황
Alabama	2000 AL HB 390: 2000 AL SB 312	2000년 2월8일 도입; 하원 금융보험위원회에 계류중
Alaska	현행법이 없음	
Arizona	2000 AZ HB 2069	2000년 4월 17일자 주지사 승인, 제정
Arkansas	1999 AR HB 1021	1999년 1월 11일 도입; 동년 3월 4일 입안자가 철회
California	1999 CA SB 820	1999년 9월 16일 제정
Colorado	2000 CO HB 1329	2000년 1월 26일 도입; 동년 3월 10일자로 무기한 연기
Connecticut	현행법이 없음	
Delaware	2000 DE HB 492	2000년 3월 16일 도입; 동년 7월 14일 제정
District of Columbia	2000 DC Bill 13-606	도입중
Florida	2000 FL SB 1334	2000년 5월 26일 제정 동년 7월 1일 발효
Georgia	현행법이 없음	
Hawaii	2000 HI HB 2585	2000년 1월 26일 도입; 동년 6월 30일 제정
Idaho	2000 ID SB 1334	2000년 4월 14일 제정 동년 7월 1일 발효
Illinois	현행법이 없음	
Indiana	2000 IN HB 1395	2000년 3월 15일 제정 동년 7월 1일 발효
Iowa	2000 IA HF 2205	2000년 7월 1일 발효
Kansas	2000 KS HB 2879	2000년 4월 25일 제정
Kentucky	2000 KY HB 571	2000년 4월 3일 제정
Louisiana	현행법이 없음	
Maine	2000 ME LD 2557(LR 3953)	2000년 4월 7일 하원에서 가결
Maryland	2000 MD SB 3	2000년 4월 25일 주지사 승인
Massachusetts	현행법이 없음	
Michigan	2000 MI HB 5537	2000년 3월 22일 도입; 하원의 보험금융위원회에서 검토중
Minnesota	2000 MN HF 3109	2000년 4월 13일 제정
Mississippi	현행법이 없음	
Missouri	현행법이 없음	
Montana	현행법이 없음	

김은영

Nebraska	2000 NE LB 929	2000년 3월 30일 제정
Nevada	현행법이 없음	
New Hampshire	현행법이 없음	
New Jersey	2000 NJ SB 1183	2000년 3월 27일 상원입법 위원회에서 검토중
	2000 NJ AB 2497	2000년 5월 22일 하원 통신전기위원회에서 검토중
New Mexico	현행법이 없음	
New York	현행법이 없음	
North Carolina	2000 NC SB 1266	2000년 8월 2일 제정
North Dakota	현행법이 없음	
Ohio	1999 OH HB 488	2000년 6월 14일 주지사 승인
Oklahoma	2000 OK SB 1598	2000년 6월 6일 제정
Oregon	현행법이 없음	
Pennsylvania	1999 PA SB 555	1999년 12월 16일 제정
Rode Island	2000 RI HB 7694	2000년 2월 3일 도입
	2000 RI SB 2569	2000년 2월 9일 도입 동년 6월 13일 제정
South Carolina	현행법이 없음	
South Dakota	2000 SD SB 193	2000년 3월 1일 제정
Tennessee	현행법이 없음	
Texas	현행법이 없음	
Utah	2000 UT SB 125	2000년 3월 7일 제정
Vermont	2000 VT HB 609	2000년 1월 6일 도입, 하원을 거쳐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검토중
Virginia	2000 VA HB 499	2000년 4월 9일 제정, 동년 7월 1일 발효
Washington	현행법이 없음	
West Virginia	2000 WV HB 4493	2000년 2월 10일 도입; 동년 3월 3일 하원 가결 상원 입법 위원회에서 검토중
	2000 WV SB 443	2000년 2월 10일 도입 주간협력위원회와 입법위원회에서 검토중
Wisconsin	현행법이 없음	
Wyoming	현행법이 없음	

자료: McBride Baker & Coles, Legislation Adopting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October, 2000

Laws)가 주관하여 법개정을 진행해 왔다. 3월의 3차 초안, 1998년 7월의 4차 초안, 초안은 1997년 11월의 2차 초안, 1998년 1998년 9월의 5차 초안, 1999년 1월의 6차 초안, 1999년 3월의 7차 초안을 거쳐 1999년 7월의 8차 초안을 최종법안으로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동시에 통일 2) 통일주법전국대의원회의에서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은 기존의 UCC 2B편이 아니라 UETA임을 천명했다.

컴퓨터정보거래법(UTA;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²⁾을 채택한 바 있다. 통일 전자거래법은 초기에 5개의 장과 30개의 조문으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장을 없애고 21개 조문으로만 확정되었다.

1. 통일전자상거래법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에 비교해 볼 때 매우 상세하고 개념정의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제2조에서 16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전자기록, 전자서명등에 대한 정의가 있고 자동화된 거래, 컴퓨터 프로그램, 전자대리인, 정보, 정보처리시스템, 보안절차등 우리나라에 없는 정의가 들어 있다. 2조에는 없지만 16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도 우리나라에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우리나라는 사이버몰, 인증기관을 강조한 것이 미국과 다른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은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명시하여 기술발전에 따른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아 향후 법조항의 조정이 불가피하리라 본다. UETA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 즉 민간부문을 달리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또다른 특징이다. 정부부문의 전자기록에 대해서는 정부기록의 보존을 전자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정부문서

감축법과 맥락을 같이하여 정부의 공문서를 전자기록으로 대체하여 보관하고 종이문서를 파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양도가능한 기록에 전자어음에 대한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점도 앞서가는 법의 면모를 보여주는 일면이다.

2. 적용범위

통일전자거래법은 모든 거래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라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대상으로 함을 명시하고 있다. 예외조항으로 유언에 관한 법률과 함께 통일상법전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경우³⁾에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전자기록이나 전자서명은 다양한 법적 의미를 가지므로, 통일상법전과 통일전자거래법 이외의 다른 법률과 관련해서는 적용이 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주에서 규제를 한 경우에도 법적용이 배제된다. 지불 시스템에 관한 통일상법전의 Article 3, 4, 4A 역시 법적용이 제외되는 분야이다. Article 5, 8, 9도 제외되었다. 16조의 양도가능한 기록에는 전자어음에 조정가능한 약속어음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기술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중인 통일상법전 Article 2(Sales), 2A(Leases)에 따른 거래에도 본법은 적용된다. 그러나 특정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중첩되어 법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현실이다. 즉, 통일상법전 제4장의 적용을 받는 수표에 이루어진

2) 통일주법전국대의위원회에서는 컴퓨터정보거래에 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은 기존의 UCC 2B편이 아니라 UETA임을 천명했다.

3) UETA가 적용되는 통일상법전은 1-107조, 1-206조, Article 2, Article 2A이다.

전자서명에는 통일전자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이러한 전자수표가 유효한 수표일 수는 없지만, 전자뱅킹에 의한 수표의 추심에 관한 법규(check retention statutes)와 관련해서는 동법이 적용된다. 물론 제12조인 전자기록의 보유(Retention of Electronic Records; Originals)를 만족시키는 한에서 적용된다.

3. 전자기록과 서명의 적용

통일전자거래법 제5조에서는 동법이 전자거래를 강요하는 법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다만 전자거래를 하기로 약속한 일방이 전자수단에 의한 다른 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아 일방에 의한 전자거래를 이용한 횡포를 방조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초안에 대한 설명에 보면 일방의 거래거절의 효과는 주변환경에 따른 적법한 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⁴⁾

동법의 목적이 상업적의미에서의 전자거래, 정부부문에서의 전자거래를 지속적으로 파급시킴이라고 규정하며 각주간의 통일된 입법으로 말미암아 주간 전자적 또는 비슷한 기술적 매개에 의한 상용, 정부부문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려 함임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향후 있을지 모르는 기술적 진보에 의한 예기치 못한 수단 역시 앞으로 상용될 것임을 암시한다.

즉, 통일전자거래법은 미래의 기술발

전에 의한 새로운 매개의 정당화를 위한 Framework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특정기술을 못박은 우리나라의 전자거래서명법과 비교가 되는 점이 있다. 신기술이 등장하면 우리나라법은 자동적으로 개정을 해야 하지만 통일전자거래법은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 있다.

4. 전자기록과 서명의 법적 인정

제7조 a항을 보면 전자적 기록이나 서명이 단지 전자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나 강제집행력이 부인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내용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전자적 계약의 법적효력은 인정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법과 UNCITRAL의 모델법⁵⁾도 이러한 우회적 표현으로 전자적 문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어서 법이 서명기록을 요구하는 경우나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유효함을 인정한다.

제8조는 정보의 전자적 전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타의 법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저장에 대해 전자정보를 수신했을 경우 나중에 그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한다. 발신자에게 서면으로 될 수 있는 정보를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차후에 자료로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문제는 수신자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저장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 때는 법원에서 발신자가 법규에 따랐는지에 따라 수신자와 발신자간

4) 1999년 7월의 초안에는 이항이 과거에 전자거래를 했더라도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덧붙여진 조항이라고 설명한다.

5) 당초에 제7조가 UNCITRAL의 전자상거래모델법의 제5, 제6, 제7조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

의 책임소재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발신자가 기록이 저장되거나 프린트될 수 없는 정보를 보낸다면 수신자는 보내진 정보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발신자는 상대방이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보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신은 하되 저장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5. 전자기록과 서명의 귀속

제9조에서는 전자기록이나 서명이 그 사람이 행동으로 이루어졌으면 그사람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이전의 7차 초안에서 전자대리인의 행동도 그사람에게 귀속된다⁶⁾고 한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으로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그 행위를 지시한 인간의 행위로 본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행위의 효과가 전자적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는 조문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팩스를 통해 보낸 정보도 행위의 주체를 인지할 수 있게 하며 letterhead 자체를 서명으로 본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발신자의 의사를 탐지할 수 없어 letterhead 자체를 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초안자의 의견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서명의 유무를 떠나 전자적 기록에 의한 정보가 특정인(주로 발신인)에게 전자적 기록이 귀속됨을 알려주기에 충분하다고

한다. 유의할 점은 보안절차에 대해 언급한 점이다. 이는 전자적 환경에서 보안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귀속문제를 명확하게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6. 변조나 오류의 효과

변조나 과실의 효과는 6차 초안까지 입안이 되지 않았던 규정이다. 조문 제1항에서는 당사자들이 변조나 오류를 찾아낼 보안절차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보안절차로 인해 오류를 탐지한 당사자에게는 오류의 효과가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보안절차를 통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므로써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측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대 개인의 거래에만 해당된다. 제2항에서 개인이 상대방의 전자대리인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를 할 경우 개인이 보낸 전자기록에 오류가 있다면 발견하는 즉시 상대방에게 고지를 해야 하며 그 경우 개인은 오류가 있는 전자기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개인이 취해야 할 몇가지 사항은 계약이 이루어져 받은 혜택, 보수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오류의 법 같은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은 상호의 계약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과실에 따른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지가 가능하지 않은 계약으로서는 계약에 의한 혜택이나 보수가 반환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받는 보수가 정보일 경우 그러하다. 또한 받은 보수가

6)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March, 1999, Chicago.

수령당시와 반환시의 가치가 다를 경우는 계약해지가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것이다. 두 경우가 다 오류의 전자기록에 의한 피해를 피할 수 없는 전형적인 예이다.

7. 공증과 인증

법이 서명이나 기록이 공증이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요지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법이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따랐다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한다. 즉, 공증을 받아야 한다면 공증인이 합석하여 서명한 공증인의 전자서명도 함께 보내져야 한다는 것이다.

8. 전자기록의 보존: 원본에 대해

전자기록의 보존에 대해서는 기록이 최초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정보를 반영하는 상태여야 하며 후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사용가능한 상태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를 단순히 발신하거나, 통신용이거나, 수신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은 원본인지를 확인하는 앞의 절차가 필요없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자료를 증거자료, 감사, 기타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서의 절차가 유효하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수표에 관한 규정이다. 수표의 앞뒷면을 파일로 보존하여 앞의 보존절차를 거쳐도 전자자료로서의 수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점이다. 각 주정부는 법률적 환경에 따라 추가적 필요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록 고려하고 있다.⁷⁾ 전자기록의 증명적 효력에 대해서도 부인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⁸⁾⁹⁾

9. 자동화된 거래

계약은 양당사자들의 전자대리인에 의해 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는 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대해 모르거나 전자대리인의 행위를 모르더라도 가능하다. 당사자 중 일방이 개인이고 타방이 전자대리인일 경우 개인이 계약을 거절할 자유가 있고 자신의 행위를 인지할 수 있다면 전자대리인과의 계약은 체결될 수 있다.¹⁰⁾

10. 발신과 수신

제15조는 발신과 수신에 대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규정이다. 전자기록은 당사자간 다른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수신인이 지정했거나 수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보내졌으면 발신으로 본다. 물론 그 시스템에서 처리가 가능해야 하고 시스템에 도착하거나 하는 것도 발신의 조건중 하나이다. 특별한 약속이 당사자간에 없는 한 전자기록은 역시 수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처리 가능한 상태로 도달할 때 수신한 것으로 본다. 이 때 정보처리시스템이 있는 장소가 원래 전자기록이 도착해야 할 장

7) UNCITRAL 모델법 제8조, 제10조 참조

8) UNCITRAL 모델법 제9조 참조

9) 이 조항은 통일증거법 제1001조, 제1002조, 제1003조, 제1004조와 조화를 이룬다.

10) UNCITRAL 모델법 제11조 참조

소와 다르더라도 상관없다. 전자기록은 발신인의 영업소에서 보내지고 수신인의 영업소에서 수신되는 것으로 본다.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실제로 보내지지 않거나 받았다고 생각되는 기록이 실제로는 받은 일이 없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 처리된다.¹¹⁾

11. 양도가능한 기록

통일상법 제3조에 의한 어음¹²⁾이거나 전자기록이 문서화된 상태의 동법 제7조에 의한 문서를 양도가능한 기록이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전자유가증권제도를 인정하는 것이라 한다. 우리나라법에는 물론 존재하지 않고 UNCITRAL의 모델법도 채택하지 않은 조항으로 독특한 면이 있다. 전자화된 어음의 통제는 통제권을 확보한 자가 할 수 있으며 이 통제권은 어음이 발행된 소지인 또는 양도받은 소지인이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 통제권은 전자어음의 존재를 유일하며 원본임을 인식해주며 불변의 것임을 증명해줄 인증서가 있을 때 주어진다. 인증서는 통제권을 주장하는 당사자나 지정된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증서에 첨가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통제권을 가진 당사자의 허가 하에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때에도 새로운 인증서는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서의 부분은 비인증서류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일상법전 1-201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양도가능한

기록의 통제권을 가진자는 소지자이며 동법전상의 동일한 어음과 같은 권리를 지닌다고 한다.¹³⁾ 전자어음은 원본대로 보존이 가능하고 저장, 양도등에 비용이 들며 심지어 자연재해에서도 전자어음은 법적인 요구사항들인 소지, 회복, 전달등이 용이하다. 다시 말해 어음의 물류비용 감소가 장점중 하나라는 것이다. 여기서 전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약속어음을 포함하는 특정 수단을 전자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문제가 있다. 통일전자거래법에서는 약속어음과 부동산증권(Paper documents of title)이 양도가능기록대상이다. 수표는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면화참고영수증의 전자화가 양도가능서류의 예로 시스템이 설치되었다.¹⁴⁾ 한국은 이 사례를 검토, 연구해본 후에 전자어음에 대해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전자어음에 관한 가장 중요한 요점중 하나가 전자어음을 양도받은 소지인이 오직 하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앞서 논했던 제3자에 의한 인증서의 존재로 해결될 수 있다. 양도가능기록조항에서의 약점은 중간의 어음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이행강제성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이 문제는 향후의 통일전자거래법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외에 언급되는 저장증권¹⁵⁾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저장제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전자어음으로 적용될 수 있

11) UNCITRAL 모델법 제15조 참조

12) 실질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전자어음에 관한 조항은 아니므로 단지 참조 조항이라 하겠다.

13) Revised Article 9(UCC), Section 9-105 참조

14)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735조 이하 조항에 의함

15) 우리나라에는 주택저당채권유통화제도가 이에 해당될 것 같다. 윤주현외 3인,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신주택정책 방향 p. 244-246, 국토연구원, 1998. 12

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기존 금융시스템과 전자상거래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조항이기도 한만큼 금융시스템의 새지평을 여는 조항으로 받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12. 정부기관관련조항

제17조, 제18조와 제19조는 정부기관에 의한 전자문서의 생성, 보존에 관한 조항들이다. 정부가 과연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을 사용할 것인지 또는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것인지는 각 정부기관의 결정사항이라고 규정한다. 또한 사용되는 형식과 내용에 관해서도 정부기관이 명시해야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법이 모든 정부기관이 반드시 전자기록과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¹⁶⁾ 이 규정들은 정부기관이 전자문서를 사용하되 타 정부기관, 민간인과 상호사용이 가능하도록 형식을 일치시켜줄 것을 장려하고 있다. 형식이 다를 때에는 다른 수준의 기준을 명시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것을 명하고 있다. 상호호환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면 정부기관사이에, 혹은 민간과의 장벽을 만들게되는 위험이 상존하게 된다.

수의 주(50개주중에서 29개주)에서는 통일전자거래법을 기본으로 자체내의 법을 통과시키거나 입법중이다.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는 주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은 높다. 즉, 통일전자거래법자체가 미국의 전자거래법이 되고 있거나¹⁷⁾ 연방전자서명법¹⁸⁾을 채택해야 한다. 1999년 전자거래기본법을 입법화시킨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의 동정이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단일법안을 가진 나라의 제도와 주마다 법안에 차이가 있는 나라의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라 무리가 있지만 향후의 지향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선 개념정의부터 상당히 다르며 입법자의 입장이 상이함을 알 수가 있다.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정의가 두 법에 동일하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혀 다르지만 통일전자거래법이 기초적인 개념을 정의했다면 우리나라법은 사이버물과 인증기관까지 다루어 놓았다. 또한 원본성에 대한 규정은 우리나라법에 없다. 통일전자거래법의 경우 최근 개정에는 세부지적사항을 첨부하여 전자거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이 생길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려고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우

V.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의 시사점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대다

16) 일리조이주법 제25-101, 플로리다주 전자서명법 96장-324조, 제7조 참조

17)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자로 발효된 플로리다 주의 전자상거래법을 보면 통일전자거래법을 그대로 기존법에 삽입해 놓았다.

<http://www/leg.state.fl.us/session/2000.../billtext/html/billtext/sb1334er.html>

18) 2000년 6월에 통과되어 10월 1일에 발효되는 법이다. 각 주들은 전자서명에 관한 이 연방전자서명법을 채택하든지, 기존의 통일전자거래법을 선택하든지, 자체적으로 기술중립적인 서명법을 만들든지 하게 되어 있다.

<http://www.mbc.com/newdev/FedEsign.htm>

리나라처럼 따로 두지는 않았으나 전문에서 전자거래상의 분쟁을 관련법과 주법을 감안하여 법원이 해석,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주법원의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판례가 다양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양한 판례를 놓고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다음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은 최근 폭증하는 사이버거래의 문제점을 감안해 본다면 주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중간역할을 지적해 놓았을 뿐이다. 개인과 개인사이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문판매법¹⁹⁾을 개정하면서 대폭 조항을 바꾸고 있는 형편이기는 하다. 특히 전자서명법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역할은 세세하게 지적해 놓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각종 불법행위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벌칙이 규정되어 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자서명법에서 전자서명을 비대칭 암호화방식으로 규정한 것이 흠이 되고 있으며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조항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비하면 통일전자거래법은 기술발전예 따른 새로운 매개체의 등장을 암시하고 있고 동법이 미래의 기술발전예 의한 새로운 매개의 정당화를 위한 Framework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전자거래법은 전자적문서의 신뢰성에 관한 공인기관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양도가능한 기록이라 하여

송신인이 수신인에게 이전하고 기록이 존재할 수 있는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공인기관의 인증이 필요없다 하더라도 양도가능기록의 소유자가 허락을 해야 기존문서의 개정이 인정되는 규정을 두어 소유자의 소유권, 재산권을 강화시켰다. 여기서 언급된 전자어음은 미국에서 물류산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단계에 와 있다.²⁰⁾ 게다가 전자어음 할인시장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보면 대폭적인 법령과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미국의 통일전자거래법을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VI. 결 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UNCITRAL 모델법²¹⁾을, 미국은 UNCITRAL의 모델법과 통일상법전의 라이선스편, 캐나다 통일전자상거래법등을 참고하여 전자상거래법이 만들어졌다. 상관습의 차이가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당연히 있지만 전자거래에 관해서는 상관습의 차이를 논하기 어렵다. 국가간의 무역에서도 마찬가지 추세이다. 전자무역은 문화차이를 기본으로 행해진 국가간의 무역관행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

19) 빠르면 2001년 상반기부터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과 서비스도 소비자가 원할 경우 무조건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2000년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논의될 거치게 된다.

20) 정부와 금융권은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결제시스템의 하나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플랫폼인 'B2B 전자결제시스템(KEPS)'을 구축해 나가기로 하고 기존 결제관행에 맞춰 전자수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개발, 표준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00.10.8일자
21) 우리나라의 법은 모델법을 참고했지만 나름대로 전자서명과 인증기관까지 추가시켰다.

거래의 선진국인 미국의 전자상거래법을 연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대륙법에서 영미법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둘다 UNCITRAL 모델법을 참고로 하였지만 우리나라법이 정부의 역할에 중점을 둔 반면 통일전자거래법은 정부부문을 뒷부분에서 문서감축의 여지나 주간 통상의 활성화등에 고정시킨 느낌이 있다. 양법이 모두 전자상거래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고²²⁾ 통일전자거래법에서는 해석편에서 법원에 이 역할을 위임해 놓았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판례연구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법에는 언급되지 않은 전자어음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논의가 나온 만큼 관련법의 개정이 서둘러져야 한다. 그리고 미국에서의 전자어음과 관련된 각종 판례연구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갑, 최성준, 정보사회에 대비한 상사법 연구서론, 통신개발연구원, 정보사회에 대비한 일반법 연구, 1997
- 김진환, 전자거래의 법률적 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1998. 12
- 손진화, 전자상거래의 법적 문제, 법학논총,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8. 6

심종석, 정경진,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청림출판, 2000. 3

오병철, 통일전자거래법에 관한 고찰, 국제거래법학회 proceeding, 1999. 6

이은영,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권리, 인터넷법률 창간호, 2000. 6

윤주현외 3인, 주택시장구조 변화와 신주택정책 방향 p. 244-246, 국토연구원, 1998. 12

최준선, UNCITRAL 모델법과 우리나라의 전자거래기본법 비교, 한국비교사법학회 창립 4주년 기념 학술대회 proceeding, 1998. 10

<http://www.kyungwon.ac.kr/~profsjh/ec/ml-ec.htm>

<http://www.kyungwon.ac.kr/~profsjh/wyc/ec-law.htm>

http://altair.chonnam.ac.kr/~bk21law/paper_jongbsq.htm

http://www.law.upenn.edu/bll/ulc/ulc_frame.htm

<http://www.leg.state.fl.us/session/2000...1s/billtext/html/billtext/sb1334er.html>

<http://www.mbc.com/ecommerce.html>

<http://www.mbc.com/newdev/FedEsign.htm>

22) 우리나라는 전자서명법에서 인증업무에 대해서만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벌칙규정이 있다.

A Study of Electronic Transaction Law :
Basic Electronic Transaction Law in Korea an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

Un-Young Kim*

Abstract

In this era of changing system, we may learn lesson from newly developed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 Act(UETA) in 1999. Korea has its counterpart as the Basic Electronic Transaction Act and Electronic Signature Act made by 1999. While UETA stresses on transaction law between individuals, that of Korean stresses on the role of government in electronic transaction. Both laws have the common definitions as electronic record, electronic signature, however, UETA has its own definitions such as automated transaction, computer program, electronic agent, inform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security procedure. Especially, transferable record in section 16 is one of the most unique concept which Korean law does not provide. Korean government is planning to introduce electronic note in the near future, which will make unprecedented reform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Since Korean law does not have such a concept as electronic note, revision of the law is expected soon. Korean law has its specialty which puts stress on cyber mall, authentication agency, and consumer protection. In U.S., the interpretation of law by court is important when they have disputes according to common law tradition. Studies on cases on disputes in U.S. is needed most for Korean application.

* Assistant Professor, Faculty of Business and Economics, Halla University